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58	제출년월일 : 2000.
		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정보화사회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, 단종등으로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기관이 없어 소요조회시 행정력이 낭비되고
-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써 감정수수료만 낭비되는 경향을 해소하고자 소요조회 및 감정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불용품 소요조회대상(제16조제3항)
 - 동일 광역시·도(시·구·군·자치구 포함)와 정부각부처, 타 특별시·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 가격기준)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
 - 동일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
 - ⇒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(장부가격 기준)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

○ 불용물품 처분시 물품의 감정가액 기준조정(제17조제4항)

- 불용품 감정대상 :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
⇒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 가격 기준)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

제17조제4항 단서중 “단가 1천만원이상인”을 “단가 2천만원 이상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관 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00조(물품의 처분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
③물품의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123조(불용결정)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· 품명 · 규격 · 수량 및 가액
2.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
3. 물품의 사용경위
4.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
5.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
6. 처분방법

□ 개정준칙 : 별첨

“2000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 30주년의 해”

행정자치부

우110-760/종로구 세종로 77-6 정부중앙청사 1310호/전화 3703-4960(행) 4960/전송 3703-5550
 공기업과 과장 송영곤 서기관 김두수 담당 최한교

문서번호 공기 13330 - 560

시행일자 2000. 8. 8(5년)

경유 :

수신 : 수신처참조

참조 :

선행	주파	324	지시
접수	일자 시작	2000. 8. 09	결재
	번호	3237	재
	처리과	계약과	공
	담당자	임상자	람
	심사자		심사일

제 목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

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. 5. 1부터 6.30 까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재물조정과 불용처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.

붙임 :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. 끝.

행정자치부 장관



수신처 : 니01~07, 10~18(참조 : 물품관리담당과장)

【별표 1】

○○시·도, 시·군·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

○○시·도, 시·군·구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

제17조제4항중 “단가 1천만원이상인”을 “단가 2천만원이상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진·구조문 대비 표